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40
------------	-----

제출년월일 '99. 7.

제 출 자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제천시 근로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있어 행정규제사무 완화 차원에서 회관 관리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자구 수정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7조4항 “관내의 시설을 변경, 신축할 때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규정을 삭제 완화
- 조례 제9조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의 해제 할 수 있는 규정 삭제 완화
- 조례 제13조1항3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의 불허가 할 수 있는 규정 삭제 완화
- 조례 제13조2항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는 규정 폐지

붙 임

가.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수탁의 의무)중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조(위탁의해제등)중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제목 “사용의불허가, 입장거부, 퇴장 등”을 “사용의불허가”로 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제3호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③항 (생략)</p> <p><u>④수탁자는 관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u></p> <p><u>⑤~⑥항 (생략)</u></p> <p>제9조(위탁의해제등) (생략) 1~3호 (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p> <p>제13조(사용의 불허가, 입장거부, 퇴장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호 (생략) 3.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정신이상자 또는 술 취한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자 4. 위험한 물건을 가진자 5.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p>	<p>제7조(수탁자 의무) ①~③항 (현행과 같음) (삭제)</p> <p><u>④~⑤항 (현행과 같음)</u></p> <p>제9조(위탁자해제등) (현행과같음) 1~3호(현행과 같음) (삭제)</p> <p>제13조(사용의 불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호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p>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1995. 1. 3] [조례 제71호]

제1조(목적)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생활편의 및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근로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제천시 화산동 444번지, 445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회관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위한 교육장 및 회의실
2. 노동단체 사무실
3. 구판장 사업
4. 예식장 및 식당운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2.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근로자의 휴식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의 제공
4.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구판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천시 및 단양군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위탁운영) ①회관이 운영하는 사업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노동단체에 위탁운영 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을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수탁자는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관리 규정 및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승인) ① 회관은 제4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판사업 등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모든 가격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염가로 책정하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료) ① 근로자의 회관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시장이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의 불허가, 입장거부, 퇴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정신이상자 또는 술 취한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자
4. 위험한 물건을 가진자
5.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1993.11.18. 조례 제862호)는 이를 폐지한다.